

# (사)대한화장품협회

직인생략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/전화 070-5057-4019/팩스 02-782-6659  
담당부서: 정책연구실 부서장: 고정은 실장 담당자: 한종민 팀장 e-mail: jmhan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2-70호

시행일자: 2026.02.23.

수신자: 화장품 영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화장품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 의원 대표발의) 의  
견조회의 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1203호(2026.2.20.)관련입니다.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化粧品の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,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·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, 화장품 및 그 용기·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 化粧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 의원 대표발의)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2월 27일(금)까지 우리협회(이메일 : jmhan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: 「化粧品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 의원 대표발의) 1부.

붙임2: 검토서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